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2.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85호로 2021년 10월 8일 최봉희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사업 (안 제4조)

다. 문화예술 강좌 운영 및 수강료 (안 제5조 ~ 제6조)

라.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1. 10. 8. ~ 10. 13. / 6일 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구의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서,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서 구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질이 다른 사무를 하나의 조례에서 관장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무를 구분하여 조문을 분리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각 조례를 정비하고자 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따로 정한 것으로 보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 “전통문화”, “지역예술인”,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용어를 정의함.
-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공간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문화예술 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강좌 대상 과목의 선정, 강사 위촉 및 해촉,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문화예술 행사, 공연, 강좌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현행조례에서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문 정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임.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성격이 다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가 하나의 조례로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문만을 분리하여 정비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등포구의 지역문화예술의 특색을 반영하고 활성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